

관세연구 18-0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에 관한 연구

2018. 6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에 관한 연구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 상 화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양 지 영 연구원

이 재 선 관세사

목차

I. 서론	9
II. 품목분류 개요 및 원칙	11
1. 품목분류 개요	11
가. 품목분류의 의미	11
나. 품목분류의 원칙	15
다. 품목분류의 적용	20
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	26
가. 복합기계의 의미	26
나.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	28
III.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사례	34
1. WCO	34
가. 스마트워치(smart watch)	34
나. 드론(drone)	37
다. 가상현실 기기(VR)	39
2. 우리나라	43
가. WCO 결정물품	43
나. 자동자료처리기계 결합 물품	45
다. 블루투스 기계	47
라. 자율주행기기	49

3. 일본	51
가. WCO 결정물품	51
나. 전자칠판	54
다. 블루투스 기계	54
4. EU	56
가. WCO 결정물품	57
나. 블루투스 기계	59
5. 미국	62
가. WCO 결정물품	62
나. 블루투스 기계	66
다. 자율주행기기	67
6. 소결	67
IV. 시사점	70
1. 품목분류에 대한 안내 강화	71
2. 관련 규정의 정비	72
가. 감면대상의 최신성 확보	72
나. 간이정액환급 기준의 정비	73
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검토	74
라. 통합공고의 정비	76
3. HS 개정 준비	77
가. 복합기계 품목분류 규정의 일원화	77
나. 신상 복합기계의 특계호 신설	78
참고문헌	81

표 목차

〈표 II-1〉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6
〈표 II-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규정 1	30
〈표 II-3〉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규정 2	31
〈표 III-1〉 WCO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35
〈표 III-2〉 WCO 품목분류 사례(드론)	38
〈표 III-3〉 WCO 품목분류 사례(독립형 VR)	40
〈표 III-4〉 WCO 품목분류 사례(다이브형 VR)	42
〈표 III-5〉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태블릿 컴퓨터와 결합한 프로젝터)	46
〈표 III-6〉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전자칠판)	46
〈표 III-7〉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이어폰)	47
〈표 III-8〉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	47
〈표 III-9〉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라디오 기능))	48
〈표 III-10〉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마이크)	49
〈표 III-11〉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자율주행기기)	50
〈표 III-12〉 일본 품목분류 사례(GPS 기능 / 운동용 시계)	52
〈표 III-13〉 일본 품목분류 사례(드론)	52
〈표 III-14〉 일본 품목분류 사례(농약 분무용 드론)	53
〈표 III-15〉 일본 품목분류 사례(독립형 VR)	53
〈표 III-16〉 일본 품목분류 사례(전자칠판)	54
〈표 III-17〉 일본 품목분류 사례(무선이어폰)	55

〈표 III-18〉 일본 품목분류 사례(라디오 무선헤드폰)	55
〈표 III-19〉 일본 품목분류 사례(무선스피커)	55
〈표 III-20〉 일본 품목분류 사례(라디오 무선스피커)	56
〈표 III-21〉 EU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57
〈표 III-22〉 EU 품목분류 사례(드론)	58
〈표 III-23〉 EU 품목분류 사례(VR)	58
〈표 III-24〉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헤드셋)	60
〈표 III-25〉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	60
〈표 III-26〉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라디오알람 스피커)	61
〈표 III-27〉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마이크)	61
〈표 III-28〉 미국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62
〈표 III-29〉 미국 품목분류 사례(드론)	63
〈표 III-30〉 미국 품목분류 사례(VR)	64
〈표 III-31〉 미국 품목분류 사례(VR)	65
〈표 III-32〉 미국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헤드셋)	66
〈표 III-33〉 미국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사운드바)	66
〈표 III-34〉 미국 품목분류 사례(자율주행기기)	67

그림 목차

[그림 II-1]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 예시	18
[그림 II-2]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예시	21
[그림 II-3] 품목번호의 관세감면 적용 예시	23
[그림 II-4] 품목번호의 관세환급 적용 예시	24
[그림 II-5] 품목번호의 수출입요건 적용 예시	25

I. 서론

- 기계·전기기기는 편의성 향상,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 충족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음
 -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기계·전기기기를 HS에서는 복합기계로 규정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HS에서는 기계·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16부의 주에서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분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의 미비, 주된 기능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기인함
 - 실제로 우리나라는 EU와 DMB폰을 TV(관세 14%)로 분류할지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분쟁, 인도·터키 등과 스마트워치를 통신기기(관세 0%)로 분류할지 시계(관세 4~25%) 또는 기타의 전자기기(관세 30%)로 분류할지에 대한 분쟁을 겪었음

- FTA 협정의 확대 등으로 세율이 다양해지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수출입 요건 등이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각 국가 간 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면서 복합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품목분류는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수출입 요건의 확인, 감면 규격의 확인, 수출 환급액의 기준, 원산지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수출입통관에 있

어서 정확한 품목분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복합기계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는 세율적용, 수출입요건 구비, 감면적용, 원산지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 간에는 국제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따른 국제적 분쟁사례와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분석 및 연구하여 최근 품목분류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유도하고,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적용, 요건확인 등과 관련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 국제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원칙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합기계와 관련된 관세제도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복합기계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의의와 연혁, 적용분야, 복합기계의 범위 등을 설명한 후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WCO, 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등 주요국의 복합기계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품목분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Ⅱ. 품목분류 개요 및 원칙

1. 품목분류 개요

가. 품목분류의 의의

1) 품목분류의 의의 및 연혁

- 품목분류란 여러 가지 물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고 배열하는 작업임¹⁾
 - 또한 특정한 물품이 이와 같이 작성된 물품배열표상의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의미로도 사용됨

- 품목분류는 관세 또는 물품 관련 세금의 과세대상물품과 면세대상물품을 열거하고 물품별로 세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달²⁾되어 오늘날에는 상품 자체의 연구, 통계·경제분석, 무역관리, 운송·보험 등 실용적 측면에 활용되고 있음³⁾
 - 국제기구나 정부, 공공단체, 기업이나 개인 등 산업·경제권역별 활동주체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의 품목분류표를 만들어 사용함

-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목분류의

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249

2) 김기인(2007), p. 249

3)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p. 142

개발이 필요⁴⁾하게 되자 세계 각국은 20세기 초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의 기준을 제정하였음⁵⁾

- 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채택된 최초의 통계품목분류는 1913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무역통계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공통품목분류표임⁶⁾
- 1950년에는 이를 보다 발전시킨 관세용 품목분류표인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가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⁷⁾에서 제정되었음⁸⁾
 - 1974년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는 그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개칭됨⁹⁾
- 한편 UN 통계위원회에서는 1950년 통계용 목적의 국제무역표준분류표(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제정¹⁰⁾하였고, 이를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통계에 활용하였음

□ 국제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품목분류표인 CCCN와 통계품목분류표인 SITC를 통합한 형태의 품목분류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자 1983년 CCC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을 제정함¹¹⁾

-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데이터는 세관 수출입서류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세관서

4) 김기인(2007), p. 249

5) 정재완(2010), p. 143

6) 김기인(2007), p. 249

7) 1950년 12월15일 CCC 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설립된 기구로서 1994년 6월부터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73&layoutMenuNo=312, 검색일자: 2018. 6. 5.)

8) 정재완(2010), p. 143

9) 김기인(2007), p. 250

10) 정재완(2010), p. 143

11) 정재완(2010), p. 143

류상의 CCCN 품목분류를 통계목적의 SITC 품목분류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임¹²⁾

- 또한 국제무역서류에 기재되는 각종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CCCN, SITC뿐 아니라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분류, 운송 등 특수목적의 품목분류까지 모두 통일시키는 새로운 품목분류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되었음¹³⁾

2) HS에 따른 품목분류

□ 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써 HS 협약 체결국들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HS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있음¹⁴⁾

- HS 협약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관한 통계의 수집·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¹⁵⁾

- 국제무역의 과정에서 상품들이 하나의 분류체계에서 다른 분류체계로 이동하는 경우 명칭의 재부여·재분류 및 부호의 재부여 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HS에 의하여 품목분류된 수출입물품은 HS 코드라는 상품분류코드가 부여되며 해당 코드의 6자리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임¹⁶⁾

12) 김기인(2007), p. 250

13) 김기인(2007), p. 251

1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5&layoutMenuNo=103 (검색일자: 2018. 6. 5.)

15)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16)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5&layoutMenuNo=103 (검색일자: 2018. 6. 5.)

- HS 협약 체결국은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에 일치시켜야 하며, 통일체계의 부호와 일치하는 6단위 또는 그 수준 이상으로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¹⁷⁾
- 국제무역양식의 변화 또는 기술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HS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¹⁸⁾하므로 HS는 1988년 발효 이후 6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 HS를 개정함으로써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HS 코드를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을 수용하고, 또는 신상품·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함¹⁹⁾
 - 2002년 제3차 개정 이후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제7차 개정을 앞두고 있음
- HS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결국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HS 위원회에 회부됨²⁰⁾
 - HS 위원회는 분쟁을 심의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함
 - HS 위원회는 HS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작성하고, HS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함²¹⁾
 - HS 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문제는 이사회에 회부되며, 이사회가 권고를 행함

1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19) 김성채, 「2022년 HS 개정 논의 동향」,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75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12.

20)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10조(분쟁의 해결)

2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7조(위원회의 직무)

나. 품목분류의 원칙

1)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 HS는 한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되고, 특정 물품이 항상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도록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을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²²⁾
 -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은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 작업은 단순하고 명료하여야 하고, 혼동하기 쉬운 물품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규칙임

- HS 해석에 관한 통칙에는 6개의 통칙이 있으며, 통칙 1 내지 통칙 4는 계층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되고, 통칙 5와 통칙 6은 보완적 원칙임²³⁾
 - 통칙 1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칙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통칙 2는 각 호의 용어상 분류되는 물품의 적용범위를 불완전·미완성 물품, 혼합물·결합물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적 규정임²⁵⁾
 - 통칙 3은 혼합물·결합물 등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²⁶⁾
 - 통칙 4는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22) 김기인(2007), p. 253

23) 김기인(2007), p. 254

24)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p. 29

25)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4

26)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9

27)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6

- 통칙 5는 보완적 적용규칙으로서 제시되는 물품이 포장된 경우 해당 포장을 내용물과 같이 분류할 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⁸⁾
- 통칙 6은 소호의 분류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서 먼저 4단위 호를 결정한 이후에 5단위, 6단위 세분류 시 적용되는 규정임²⁹⁾

〈표 II-1〉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구분	내용
통칙 1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2 내지 통칙 6 규정에 따른다.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a)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3	통칙 2(b)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28)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8

29)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50

구분	내용	
	(b)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c)	통칙 3(a) 또는 통칙 3(b)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통칙 4	통칙 1호 내지 3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다음의 물품에는 통칙 1 내지 4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통칙 5	(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시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b)	통칙 5(a)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

-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됨을 규정함으로써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가 품목분류에 최우선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 호(Headings)란 HS 코드 상의 4단위를 말하며, 품명이나 물품의 특성·조건 또는 경합가능 물품의 제외 여부 또는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있음³⁰⁾

- 주(Notes)는 품목분류표상의 용어와 문구의 정의, 부·류·소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 분류지침에 대한 규정³¹⁾으로 부 또는 류의 표제 다음이나 부주 또는 류주의 마지막 부분에 제기되어 있음³²⁾
 - 일반적³³⁾으로 부의 주는 당해 부에서만 적용되는 분류기준이며, 류의 주는 당해 류에서만, 소호의 주는 당해 소호의 해석·분류에만 적용됨³⁴⁾
- 호와 주는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과 더불어 HS를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HS 협약 체결국은 반드시 협약에서 정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짐³⁵⁾
- 체결국은 동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동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않아야 함

[그림 II-1]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 예시

<p>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p> <p>주:</p> <p>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p> <p>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p>
<p>제1류 살아 있는 동물</p> <p>주:</p> <p>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p>

30)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1

31) 정재완(2010), p. 161

32)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1

33) 제1부 주 2와 같이 “이 표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분류표 전체에 적용됨

34) 김기인(2007), p. 261

35) 김기인(2007), p. 261

-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 다. 제9508호의 동물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무세 8
0101	2	말	
0101	21	번식용	
		1. 농가 사육용 2. 기타	

자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3)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

- WCO는 HS에 의한 품목분류가 용이하도록 HS 해설서, HS 품목분류의견서 등의 부속자료를 발간하고 있음³⁶⁾
 - 부속자료는 통칙, 호의 용어, 주와 같이 HS의 일부를 이루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WCO의 승인을 받아 발간되는 자료로 실무상의 품목분류에 활용되고 있음

- HS 해설서는 HS 위원회가 작성한 HS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로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HS의 공식적인 해석임³⁷⁾
 -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맞추어 HS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HS 협약의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HS 해설서를 개정하고 있음

36) 정재완(2010), p. 163

37) 김기인(2007), p. 263

- HS 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HS 품목분류의견서를 발행함³⁸⁾
-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가 HS에 사용된 호의 용어, HS 해설서 등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있지만 새롭거나 특이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품목분류의견을 작성함³⁹⁾

다. 품목분류의 적용

- 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통계파악을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여⁴⁰⁾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고 있음⁴¹⁾
- HS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국내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⁴²⁾가 있으며, 이에 따라 HS 협약을 기초로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고 있음⁴³⁾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HS의 3대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HS 6단위(호) 및 부·류·소호의 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HS 6단위를 10단위로 세분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HS 위원회가 작성하고 WCO가 승인한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⁴⁴⁾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국내법에 채택하고 있음

38) 정재완(2010), p. 163

39) 김기인(2007), p. 263

40)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4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조(목적)

4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4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4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품목분류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물품별로 다르게 정해진 관세율이 명시된 관세율표임
 - 우리나라는 HS 코드와 해당 HS 코드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을 기재한 관세율표를 「관세법」 별표로 제정하여 수입물품의 관세를 확정하고 있음
 -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 이외에 덤핑방지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협정관세 등의 관세율 또한 그 부과대상을 HS 코드로 고시하고 있음

- FTA 등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계약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계약국에서의 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품목번호별로 정해져 있음
 -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⁴⁵⁾
 - 품목번호는 협정세율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결정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산지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세번변경기준이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그림 II-2]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예시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1호 관련)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45) 관세청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4&layoutMenuNo=30716#none (검색일자: 2018. 6. 1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관세율표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확정된 관세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종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세의 감면대상도 품목번호와 연계되어 적용됨⁴⁶⁾
- 관세감면은 특정 수입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한 경우 적용되는데 감면이 적용되는 물품을 특정하기 위하여 품목번호를 활용하는 것임
- 우리나라가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⁴⁷⁾,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⁴⁸⁾,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⁴⁹⁾ 등이 있음

46) 김기인(2007), p. 385

47)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48)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49)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그림 II-3] 품목번호의 관세감면 적용 예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8402	19	전기스팀보일러 (Electric Steam Boiler)	전기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시간당 60킬로그램(kg) 이상의 증기와 40킬로와트(kW) 이상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것
2	8411	99	가스터빈의 로터(Rotor), 날개(Blade), 베인(Vane)	단조 및 기계가공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공업용 가스터빈의 부분품인 것
3	8413 8414	50 10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고분자 중합용 다이어프램 펌프(Diaphragm Pump)로서 작동가능 온도가 영하 50도(℃)부터 영상 150도(℃)까지이고 작동가능 압력이 35메가파스칼(MPa) 이하인 것 2. 반도체 제조용 터보 분자펌프(Turbo molecular Pump)로서 진공도(Toor)가 10 ⁻³ 이하인 것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때에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⁵⁰⁾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됨
- 간이정액환급이란 개별환급⁵¹⁾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수출물품

5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51)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

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 품목번호별로 정하여 고시⁵²⁾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하는 제도 임⁵³⁾

[그림 II-4] 품목번호의 관세환급 적용 예시

(단위: 원)

세 번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0202.20-1000	갈비	20
0202.30-0000	뼈 없는 것	150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30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30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50
0303.29-0000	기타	20

자료: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임;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8&layoutMenuNo=115 (검색일자: 2018. 6. 11.)

52) 「간이정액환급률표」

5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8&layoutMenuNo=115 (검색일자: 2018. 6. 11.)

- 품목분류는 관세의 확정·감면·환급 등뿐 아니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⁵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됨
 - 통관을 할 때 허가 등의 조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⁵⁵⁾으로 공고됨
 - 세관장은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건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출입신고서류 심사 시 확인하여야 함⁵⁶⁾
 -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이유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⁵⁷⁾할 수 있는데, 수출입의 제한 등의 대상 또한 HS 품목분류에 따름⁵⁸⁾
 -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합 규정⁵⁹⁾하고 있는 통합공고 또한 그 대상을 HS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⁶⁰⁾

[그림 II-5] 품목번호의 수출입요건 적용 예시

세 번	품 명	수 출 요 령	관련법령
0101 21	번식용의 것	1. 통합공고 별표5에 계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별표6에 계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5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56)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8&layoutMenuNo=83 (검색일자: 2018. 6. 12.)
 57)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58) 「수출입공고」 제3조(품목분류)
 59) 「통합공고」 제1조(목적)
 60) 「통합공고」 제5조(품목분류)

세 번		품 명	수 출 요 령	관련법령
0101	21	번식용의 것	가공품은 CITES 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1	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5에 계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별표6에 계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 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료: 「통합공고」 별표1. 수출요령

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

가. 복합기계의 의의

- HS에서 복합기계란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계와 장치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를 말함⁶¹⁾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하나로 결합되고, 구성하는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⁶²⁾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61) 「관세법」 별표 제16부 주3

62)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동시에 수행하는 것 또한 복합기계로 봄⁶³⁾

-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함⁶⁴⁾
 - 제84류의 기계 등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을 말하며,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됨

- HS에서 복합기계를 정의하는 규정인 제16부 주3은 제90류 주3에 의하여 제90류에도 적용되는 바 제90류의 물품 또한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음
 -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 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과학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등으로 인하여 최신의 기계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 이외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복합기계의 개념을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 물품과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 이외의 물품이 결합된 형태⁶⁵⁾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즉 특정 기계를 품목분류할 때 해당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번호 중 하나 이상이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복합기계로 보고자 함

6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 해설서 제16부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64) 「관세법」 별표 제16부 주5

65) 복합기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물품이 결합된 형태만을 복합기계라 할 수 있음

- 한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위나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⁶⁶⁾
- 따라서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복합기계에서 제외됨
- 또한 결합되었다는 의미는 기계 자체가 서로 고착된 것을 말하며, 바닥, 콘크리트 베이스, 벽, 칸막이나 천장 등에 기계를 고정시켜 놓더라도 이를 복합기계로 보지는 않음⁶⁷⁾

나.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

1) 제16부 주3 및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

- 복합기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16부 주3에서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16부 주3은 제16부에 해당하는 제84류 및 제85류에 해당하는 복합기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됨
 - 또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 주3이 제90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90류에 해당하는 복합기계를 분류하는 데에도 이용됨
- 반면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에 분류되지 않는 복합기계는 그 특성 상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에 따라 호의 용어나 부·류의 주에 의하여 분류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일반통칙 3(b)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6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 해설서 제16부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67) 김구태·박형래, 「기능단위기계의 개념 정비와 실무상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3, p. 29

-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⁶⁸⁾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요소의 역할, 즉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므로⁶⁹⁾ 제16부 주3에서 말하는 주기능과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에 따른 본질적 특성은 유사한 개념임
 - 주기능과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 등이 있음
 -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요소 이외에 사용 빈도, 거래품명, 기술적 난이도, 개발자·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의도 등⁷⁰⁾에 따라 주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기도 함
- 주기능과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속기기, 보조기계 또는 부속품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는데, 부속기기⁷¹⁾ 등의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는 주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은 부속기기로서 주기계와 함께 분류됨⁷²⁾
 - 부속기기로는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68)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 까지도 해당됨(「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호나목 (IX))

69)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VIII)

70) 김명섭, 「다기능기계와 기능단위기계의 경합」,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87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3.

71) HS 해설서에서는 부속기기에 관한 규정에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와 제16부 주3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7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제16부 (III) 부속기기

- 보조기계에는 주기계의 능력을 확대하거나 주기계의 본래의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있음⁷³⁾
 - 부속품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뜻함⁷⁴⁾
- 주기능과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⁷⁵⁾ 때문에 복합기계를 어떤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
- 주기능 등을 결정하는 용적, 수량, 가격 등의 객관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나라, 문화, 관습마다 다르기 때문임⁷⁶⁾

〈표 II-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규정 1

구분	내용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제90류 주3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통칙 3(b)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7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제8448호

7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제8448호

7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VIII)

76) 김명섭(2018)

2) 제외 주

- HS에서는 각 부·류의 첫 번째 주에 해당 부 또는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나열함으로써 우선 분류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는데 복합기계가 분류되는 제16부,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⁷⁷⁾의 주1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16부 주1은 최근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있어 제16부와 빈번하게 경합되는 제90류, 제91류⁷⁸⁾, 제95류⁷⁹⁾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제16부보다 우선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 제90류⁸⁰⁾ 주 1에서도 제95류의 완구류는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II-3〉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규정 2

구분	내용
제16부 주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a)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b)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컴퍼지션레더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c) 보빈·스플·콕·콘·코어·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d)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e)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f)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77) 본 보고서에서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 이외의 물품으로 구성된 물품도 복합기계로 보고자 하지만,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되므로 해당 부·류 주만 검토하고자 함

78) 시계와 그 부분품

79)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0) 제90류가 속하는 제18부는 부 주가 없음

구분	내용
	<p>(g)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p> <p>(h) 드릴파이프(제7304호)</p> <p>(ij)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p> <p>(k)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p> <p>(l) 제17부의 물품</p> <p>(m) 제90류의 물품</p> <p>(n)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p> <p>(o)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p> <p>(p) 제95류의 물품</p> <p>(q)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또는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p>
제84류 주1	<p>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a)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이나 그 밖의 물품</p> <p>(b)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p> <p>(c)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p> <p>(d)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p> <p>(e)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p> <p>(f)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p> <p>(g) 제17부의 물품용 방열기</p> <p>(h)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제9603호)</p>
제85류 주1	<p>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a)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p> <p>(b) 제7011호의 유리제품</p> <p>(c)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p> <p>(d)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p> <p>(e)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p>

구분	내용
제90류 주1	<p>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a)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가죽이나 폼피션레더 제품(제4205호),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p> <p>(b)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신 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p> <p>(c)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p> <p>(d)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학소자를 제외한 비금속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8306호나 제71류)</p> <p>(e)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의 물품</p> <p>(f)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p> <p>(g)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 계수기·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 추(제8423호), 권양용이나 취급용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각종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 또는 워터젯 절단기의 가공물이나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인 것은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나 그 밖의 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p> <p>(h) 사이클용·자동차용 서치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인 음성의 기록용·재생용·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제8522호)·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 램프유닛(제8539호),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p> <p>(ij)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p> <p>(k) 제95류의 물품</p> <p>(l)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p> <p>(m) 용적 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p> <p>(n) 스플·릴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3호나 제15부))</p>

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Ⅲ.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사례

1. WCO

가. 스마트워치(smart watch)

- 스마트워치(smart watch)란 시계 형태의 배터리 구동식 장치로서 휴대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 등의 모바일 기기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기⁸¹⁾로 제8517호의 통신기기와 제9102호의 손목시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기계임
-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스마트워치를 기타의 무선통신기기로 보아 제8517.62호로 분류하고 0%의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인도,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시계나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 4~30%의 관세를 부과하였음⁸²⁾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를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제55차 HS 위원회에서 제8517.62호의 통신기기로 의결하였음

81) WCO,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5th Session," 2015. 3, p. 5

82) 김영아(관세평가분류원), 「갤럭시 기어는 어떻게 무관세가 됐을까?」, 『조세일보』, 2016. 1. 5.

〈표 Ⅲ-1〉 WCO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구분	내용
<p>물품 설명</p>	<p>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터치 감응식 OLED 디스플레이, CPU, RAM, 플래쉬 메모리, 무선 송수신기(개방형 무선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휴대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 전자시계 모듈, 동작센서, 자이로센서, 디지털 카메라 모듈, 확성기 및 마이크를 내장한 시계형태의 배터리 구동식 착용형 장치 - 기능: 음성의 기록·재생, 사진·영상의 촬영·재생, 시간정보 표시, 심박수·발 걸음의 계측을 독립적으로 수행, 모기기(host device)와 연동된 상태에서 전화의 수·발신, 음성을 사용한 모기기의 조작(메시지 발신, 사진 촬영, 알람설정, 날씨 및 스케줄 확인), 모기기로부터 알람표시, 모기기에 저장된 음악 재생, 시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심박수·소비 칼로리 등 특정 데이터의 특정·표시, 해당물품에 사용하기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실행 등의 기능을 수행 <p>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흑백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전자시계 모듈, 가속도계, 고도계, 무선 송수신기(개방형 무선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구분	내용
	<p>연결)를 내장한 밴드형태의 배터리 구동식 착용형 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시간·날짜 표시, 알람, 계보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모기기와 연동된 상태에서 전화의 수·발신, 수신된 이메일의 표시·알림, 모기기의 음악 재생기능 작동의 기능을 수행 <p>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반투과형 디스플레이, CPU, RAM, eMMC, 전자시계 모듈, 주변광센서, 가속도계, 나침반, 자이로센서, GPS, 무선 송수신기(개방형 무선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를 내장하고, NFC, 마이크로 USB를 탑재한 시계 형태의 배터리 구동식 착용형 장치 - 기능: 시간·날짜 표시,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 계보기, 음악재생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모기기에 연동되어 전화의 수신·거절, 수신된 이메일의 표시·알림, GPS 측정결과 표시, 모기기에 저장된 사진·영상 표시의 기능 수행 <p>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디스플레이, CPU, 전자시계 모듈, 마이크폰, 확장기, 진동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광학적 PPG(심박수) 센서, 무선 송수신기(개방형 무

구분	내용
	<p>선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를 내장하고, 와이파이, NFC를 탑재한 손목시계 형태의 배터리 구동식 착용형 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시간·날짜 표시, 음악 재생, 사진 표시, 저장된 일정 확인, 저장된 이메일·메시지 표시, NFC 결제 시스템, 건강·운동 정보 확인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모기기와 연동된 상태에서 전화의 수신·거절, 디지털 음성 기록·재생, GPS 기반 프로그램 사용, 이메일·메시지의 표시·답신, 모기기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날씨 등과 같은 정보 추적, 다른 기기의 무선 제어 기능을 수행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능을 본질적 특성으로 보아 제8517.62호에 분류할지, 시계기능을 본질적 특성으로 보아 제9102.12호에 분류할지가 쟁점 - 제8517호 분류 입장은 해당 물품이 시계 외에 정보 송수신, 음성·영상의 재생·기록, 전화·문자·이메일의 수신 기능을 수행하므로 무선통신기능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 - 제9102호 분류 입장은 제16부 주1(n)에 의하여 제91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우선 분류됨을 주장 - 또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기능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모기기와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송수신, 전자시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해당 기능 중 어떠한 기능도 전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최종호인 제9102호에 분류하여야 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결결과 31표를 얻은 제8517.62호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로 분류 - 시간 확인, 달력, 스톱워치 및 알람기능과 같은 전자시계로 사용하고자는 목적보다는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모기기의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아 제8517.62호에 분류함

자료: WCO(2015. 3.) pp. 5~8; WCO, "Classification of articles in the HIGH_TECH area," 2015. 6, pp. 48~56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드론(drone)

-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하며, 군사용으로 탄생했으나 고공 영

- 상·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계임⁸³⁾
- 영상·사진 촬영용 드론은 제8525호의 디지털카메라와 제8802호의 기타의 항공기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기계임
 - WCO는 사무국의 요청으로 제55회 HS 위원회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에 대한 품목분류를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해당 드론의 품목분류를 제8525.80호의 비디오카메라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HS 위원회의 결정은 드론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 즉, 군사용·상업용 항공감시, 연구·조사, 물품 수송, 농업용 살포, 오락 등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⁸⁴⁾

〈표 III-2〉 WCO 품목분류 사례(드론)

구분	내용
<p>물품 설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쿼드콥터라고 불리는 4개의 회전날개를 가진 무인 조종 드론에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된 형태로, 리모컨, 와이파이 범위확장기 및 스마트폰 거치대와 세트로 제시 - 작동원리: 리모컨의 레버에 의하여 작동하며, 리모컨에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 와이파이 신호를 통하여 실시간 전송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제조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애플

83)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4547> (검색일자: 2018. 6. 20.)

84) WCO(2015. 6.) p. 62

구분	내용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음. 와이파이 범위 확장기의 작동범위는 300m이며, 충전 후 약 25분간 비행할 수 있음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트 전체를 오락용 물품으로 제9503호에 분류할지, 디지털 카메라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제8525호에 분류할지, 비행체로 보아 제8802호에 분류할지가 쟁점 - 디지털 카메라의 품질, 크기, 사용범위, 배터리 수명 등 드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카메라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제8525호에 분류함 - 드론이 비록 재미를 주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완구로 볼 수 없으며, 제16부 주1에 의하여 제17부의 물품은 제16부보다 우선분류되므로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드론에 대한 규제가 항공관할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행체로 분류하여야 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결결과 제8525호 23표, 제8802호 12표로 제8525.80호의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 - 드론은 리모컨, 와이파이 범위 확장기, 스마트폰 거치대와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해당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드론에 있으므로 드론이 분류되는 호에 세트물품 전체를 분류해야 함 - 드론의 본질적 특성은 디지털 카메라에 있으므로 제8525.80호에 분류함

자료: WCO(2015. 3) p. 9; WCO(2015. 6) pp. 57~63; 김명섭, 「드론의 품목분류」, 『주간관세 무역정보』, 제169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 3.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가상현실 기기(VR)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⁸⁵⁾하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기를 VR이라는 명칭으로 출시하고 있음

○ VR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제품이므로 품목분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85) 김석윤, 「Sony Playstation VR set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1736호, 관세무역개발원, 2017. 2.

- VR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독립형(Head Mount Display)과 다이브형(div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WCO에서는 이를 각각 제58회, 제59회 HS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제58차 H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상정된 독립형 VR은 O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하였으나 완구의 부속품으로 분류되어 제9504.50호로 결정되었음
- 특정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다이브형 VR은 제59차 HS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9004호의 기타의 고글로 분류되었음

〈표 III-3〉 WCO 품목분류 사례(독립형 VR)

구분	내용
<p>물품 설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VR 헤드셋(HMD), 처리장치, 스테레오 헤드폰, 연결케이블(HDMI, USB, 헤드셋), AC 어댑터, 전원코드가 소매용 박스에 담겨 제시된 비디오 게임 콘솔용 VR 세트 - 작동원리: 고글과 유사한 형태의 VR 헤드셋에는 센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듈, 2개의 확대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듈의 화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음. 처리장치는 VR 헤드셋과 비디오게임 콘솔을 동기화하도록 설계됨(콘솔에서 헤드셋으로 비디오 신호를 전달하고 헤드셋에서 감지된 신호를 콘솔로 전달)
<p>경합세번 및 쟁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영상을 출력하는 모니터로 보아 제8528호에 분류할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할지, 게임기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제9504호에 분류할지가 쟁점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528호의 모니터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는 내부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비디오게임 콘솔에서 전송된 게임영상을 사용자에게 출력해주는 물품이므로 영상을 출력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제16부 주1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8528호의 특계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게임기기의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제8543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는 화면을 단순히 3차원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동작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을 360°로 이동·변환해 사용자가 마치 주변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므로 모니터의 범위를 벗어나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고 봄 - 제9405호의 게임기기 부속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는 해당 물품은 특정 게임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제95류 주3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16부 주1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게임기기의 부속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봄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95류 주3 ¹⁾),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국가가 해당 물품은 제9504.50호의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해당 호에 함께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음 - 제16부 주1에 따라 제95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특정 게임기에 전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95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제9504호에 분류함

주: 1)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자료: WCO,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8th Session," 2016. 10, p. 7; 김석윤(2017. 2.)

〈표 III-4〉 WCO 품목분류 사례(다이브형 VR)

구분	내용
<p>물품 설명</p>	<div data-bbox="619 533 1168 943" data-label="Imag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특정한 종류의 휴대폰과 연결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VR 헤드셋으로 CPU,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는 한 쌍을 볼록렌즈, 모바일폰을 제어하는 터치패드로 구성 - 작동원리: 고배율을 볼록렌즈 두 개가 이미지 왜곡 효과를 일으켜 휴대폰의 화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며,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CPU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은 사용자 시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변경된 이미지를 재생
<p>경합세번 및 쟁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할지, 고글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9004호에 분류할지, 단순한 고글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제9013호에 분류할지가 쟁점 - 제8543호 분류 입장은 해당 물품이 센서 등 전기적 요소가 부가돼 단순한 광학기기가 아닌 전기기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격 측면에서 전기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상현실 체험이라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 제9004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는 제16부 주1에 따라 제90류에 우선 분류돼야 하고, 고글과 같이 착용해 렌즈를 통한 광학효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9004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봄 - 또한 해당 물품의 주기능은 렌즈를 통해 특정 이미지 영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며, 전기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의견 - 작동 원리 등으로 볼 때 단순한 고글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제9013호에 분류해야함을 주장
<p>분류규정</p>	<p>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6</p>

구분	내용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대다수의 국가들이 제9004호 입장을 지지해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및 6에 따라 제9004.90호에 분류 - 2개의 볼록렌즈 자체의 광학적 특성으로 입체 효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제90류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고글 형태의 물품이므로 제9004.90호에 분류함

자료: WCO,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9th Session," 2017. 3, p. 8; 김진용, 『가상현실 헤드셋의 품목분류』, 제1748호, 2017. 5.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 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⁸⁶⁾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⁸⁷⁾

가. WCO 결정물품

- 우리나라는 WCO 회원국으로 HS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스마트워치, 드론, VR의 경우도 HS 위원회에서 의결한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음
- 특히 스마트워치와 드론의 HS 위원회 결정문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명시하여 해당 결정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86)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600&layoutMenuNo=105 (검색일자: 2018. 6. 27.)

87)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스마트워치는 우리나라에서 HS 위원회 의결을 상정하였고,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분류된 사례임

- 드론의 경우 HS 위원회 결정전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구로 보아 제9503호로 분류하다가 HS 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제8528호 분류를 수용하였음
 - 기존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경우 카메라 화소, 카메라 장착형태, 녹화방식, 저장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카메라에 주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⁸⁸⁾
 -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은 드론도 무선 전용 리모컨으로 조종하여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완구로 보았음⁸⁹⁾
 - HS 위원회 결정 이후 해당 결정문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였으나 기존 제9503호로 분류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변경고시⁹⁰⁾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결정사례 물품 또는 WCO 결정사례 물품의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특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다이브형 VR의 경우⁹¹⁾ 우리나라는 제8543호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제9004호의 고글과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결정되었음
 -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VR을 기존 3D 입체안경과 달리 단순히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화면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데 그

88)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982, 2016. 4. 8.

8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468, 2016. 2. 15.

90)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91) 디스플레이 장치를 내장한 HMD형의 VR로서 특정 비디오게임 콘솔에 전용하도록 설계된 VR의 경우 HS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콘솔의 부속품으로 분류함(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95, 2017. 2. 23.)

치지 않고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물품으로 그 기능이 휴대폰과 독립하여 작용하는 기계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HS 위원회에서 해당 물품을 제9004호의 고글과 유사한 물품으로 결정하자 해당 물품을 제9004.90.2000호의 3D 입체안경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⁹²⁾ 하였음

나. 자동자료처리기계 결합 물품

□ 자동자료처리기계란 ①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③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④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함⁹³⁾

- HS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제8471호에 특제하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등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다양한 기계들이 출시되면서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⁹⁴⁾하여야 하지만, 결합된 기계의 기능과 자료처리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경우 제16부 주3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태블릿 컴퓨터와 결합한 프로젝터를 자료처리와 화면투사 기능을 동등한 것으로 본 경우, 전자칠판의 자료처리기능을 보조적인 기능으로 본 사례 등이 있음

9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4호, 2017. 9. 21.]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92. Gear V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4류 주5 가

9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4류 주5 마

〈표 III-5〉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태블릿 컴퓨터와 결합한 프로젝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 PC와 빔 프로젝터를 결합한 휴대용 기기 - 기능: 디지털동화가 내장되어 있어 학습 콘텐츠로 활용가능하며,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동영상·게임을 실행하고, 저장된 동영상·사진 등을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 또는 벽에 주사하여 대형 화면을 시청할 수 있음 - 용도: 유아교육용 교구, 기업회의용 프로젝터, 야외 활동 시 사용
경합세번	-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가 분류되고, 제8528.6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가 분류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되지만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하여야 함 - 해당 물품의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제 8471호와 제8528호 중에서 그 순서상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제8528.61호에 분류함

주: 1) HS 2017에서는 제8528.62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
 자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4-03-009, 2014. 6. 9.

〈표 III-6〉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전자칠판)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86인치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물품으로 적외선 및 전자기 유도방식 터치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 기능: 손이나 전자펜 등으로 앱 실행 또는 판서를 할 수 있고, 설치된 앱을 이용한 문서읽기·편집·저장, 앱의 설치·삭제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IPTV 시청, 멀티미디어 등을 재생·출력할 수 있는 전자칠판 - 용도: 교실, 강의실, 회의실 및 사무실에서 수업·발표 등에 주로 사용
경합세번	-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가 분류되고,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가 분류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528.52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니터로 분류 - 해당 물품은 수업·강의·회의·발표·판서 등 제8528호의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한 편의상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중앙처리장치인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것으로 주기능 또는 용도는 모니터에 있고, 일반적으로 자료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4530, 2017. 6. 23.

다. 블루투스 기계

- 블루투스(Bluetooth)는 전자기기 간에 근거리에서 저전력으로 무선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으로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⁹⁵⁾
-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기는 제8517호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기기와 이어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로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무선통신기능을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제8517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음

〈표 Ⅲ-7〉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이어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형태: 블루투스 모듈, 마이크, 스피커, 배터리가 내장된 블루투스 이어폰 - 기능: 휴대폰 등 블루투스와 호환 가능한 기기와 연결되어 음악재생 및 핸즈프리 기능 수행
경합세번	- 무선전신용 기기인 블루투스가 분류되는 제8517호 또는 이어폰이 분류되는 제8518호가 경합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은 핸즈프리 및 음악재생을 위해 음성을 송수신하는 블루투스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기타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제8517.62호에 분류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5904, 2017. 11. 2.

〈표 Ⅲ-8〉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형태: 외부기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해 외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을 증폭해 출력하는 스피커와 음성정보가 저장된 반도체 매체와 연결해 동 매

95)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user.nhn?docid=4ce92ba1c54fdea1ed48aacd5bc7ba0a> (검색일자: 2018. 6. 25.)

구분	내용
	<p>체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음성재생기기를 하나의 하우징 안에 구성한 물품</p> <p>- 기능: 음성재생기와 연결하여 스피커 기능 수행, USB 메모리 등의 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 재생, 전화 수신·거절 등 핸즈프리 통화,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라디오 재생(라디오 전파를 수신하지 않음)</p>
경합세번	- 주기능을 스피커로 보아 제8518호에 분류할 것인지, 음성재생기로 판단해 제8519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p>- 해당 물품의 주기능은 스피커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형확성기가 분류되는 제8518.22호에 분류함</p> <p>- 스피커 기능은 USB로 들어온 음성을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선 또는 유선으로 외부기와 연결해 사용하는 기능이고 판매자가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스피커 수량이 3개나 되고 외관상 전반적인 모양이 스피커의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스피커에 주기능이 있음</p>

자료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1247, 2018. 3. 13; 김명섭(2018)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9〉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라디오 기능))

구분	내용
물품 설명	<p>- 외부 오디오 입력, 블루투스 연결, FM 라디오, USB 음성재생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음</p> <p>- 외부오디오 입력 단자를 통해서 스피커 기능을 활용하며, 블루투스 기능을 통하여 스피커 기능 및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p>
경합세번	- 스피커로 보아 제8518호에 분류할지, 음성재생기기로 보아 제8519호에 분류할지, 라디오 수신기기로 보아 제8527호에 분류할지 경합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p>- 라디오 수신기기로 보아 음성기록기나 재생기와 결합된 라디오 수신기가 분류되는 제8527.91호에 분류</p> <p>- 제8527호의 해설서에서는 스테레오 시스템에 라디오 수신기가 결합된 경우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은 라디오 수신기에 있음</p>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6148, 2017. 11. 16.

〈표 III-10〉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마이크)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및 작동원리: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기능: 마이크 음성을 스피커로 출력하거나 무선 또는 유선으로 스피커 기능만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경합세번	- 단순 스피커로 보아 제8518.21호에 분류할지, 음향증폭세트로 보아 제8518.50호에 분류할지, 음성재생기기로 보아 제8519호에 분류할지 경합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폰,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음향증폭세트로 보아 제8518.50호에 분류 - 제8518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와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세트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형태 및 사용설명서상의 사용방법 등에 의하면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은 음향증폭세트에 있음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6147, 2017. 11. 16.

라. 자율주행기기

-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차간 거리, 속도 등을 탐지하고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음⁹⁶⁾
 - 주변교통상황, 차량 상태 등을 측정·연산하여 차선이탈·전방충돌 등의 정보를 ECU에 전달하는 자율주행기기는 ECU로 하여금 시청각적인 경고를 발생하도록 하는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과 ECU가 다른 장치들을 제어하도록 하는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이 있음
 - LDWS의 경우 기기 자체에 음향장치는 갖추지 않았지만 차선이탈·전방충돌위험 등을 감지해 자동차의 ECU에 경보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시청각적 신호를 주는 물품이므로 제8512호의 전기식 신호용기구의 기능과 제9031호

96) 김석윤, 「Multi Function Camera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60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8.

의 측정용기기의 기능을 수행함

- 이에 따라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97)에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였으며 제9031호의 기타 측정용기기로 분류함

〈표 III-11〉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자율주행기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실내 전면 상단에 장착되어 CMOS(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카메라로 촬영된 전방 영상정보와 차량의 CAN 통신으로 전달되는 차량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각도, 선행 차량과의 상대거리·상대속도·상대가속도, 야간에 도로·전방 대향차량의 광원여부 등을 특정하여 차선이탈·전방충돌 경보신호, 광원신호를 차체의 ECU로 전송하는 장비 - 경보음, 경보아이콘 표시는 해당 물품이 아닌 차체에서 발생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에게 차선이탈·전방충돌의 위험을 판단해 경보음을 발생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자동차용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구인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체에는 경보장치가 없고 광학식 기기인 카메라를 이용해 전방 영상을 인식 후 측정·연산하여 차선이탈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기이므로 기타 광학식 측정용 기기인 제9031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광학식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49호에 분류 -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우선검토하여야 함 - 제9061호의 해설에서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윤곽과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등을 예시하고 있고, 제9031.49호의 해설서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하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3906, 2017. 7. 24; 김석윤(2017. 8) 바탕으로 저자 작성

97)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 품목분류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일본

- 일본은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품목분류사전교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음⁹⁸⁾
-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분류예규 등 품목분류를 위한 일반적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사전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 WCO 결정물품

- 일본은 스마트워치, 드론, VR에 대한 WCO HS 위원회의 결정문⁹⁹⁾을 분류예규로 고시하여 해당 결정을 따르고 있음
- 그러나 WCO 결정물품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양 또는 용도 등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HS 위원회의 결정과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음
- 스마트폰 등과 연동하여 사용되는 스마트워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스마트워치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시계로 보아 제 9102호에 분류되고 있음
- 드론의 경우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각 드론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9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2_jr.htm, (검색일자: 2018. 6. 27.);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5에서 재인용

99) 「분류예규」(1987. 12. 23. 제1299호, 최종 개정: 2018. 3. 31. 제462호) 관세율표 수출입 통계 품목표에 따른 분류 기준 및 분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국제분 예규는 WCO의 분류의견(Classification Opinion)을 기본으로 함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ariff/kaisetu/index.htm>, 검색일자: 2018. 6. 26.)

- HMD형 VR이 특정 비디오게임에 전용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제8528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표 III-12〉 일본 품목분류 사례(GPS 기능 / 운동용 시계)

구분	내용
물품 설명	① GPS 기능이 있는 시계 - 수신된 GPS, 고도, 기압, 방향 정보를 표시하는 시계로 블루투스를 통해 수신된 각종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전송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하여 전화·메일 수신을 표시함 ② 운동용 시계 - 거리·속도·심박수 등의 측정기능을 가지는 시계로 기기의 작동 상황과 측정값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마트 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연결 없이 시계로 단독 사용가능 -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스마트폰 수신전화를 표시할 수 있으나 통화기능은 없음
경합세번	-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 또는 제9102호의 시계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는 그 기능 및 용도를 보아 시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9102.12호의 전기식의 시계로 분류

자료: 나고야세관, 117000763, 2017. 3. 1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5/17/J51700103.htm, 검색일자: 2018. 6. 26.); 도쿄세관, 116005879, 2016. 12. 1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1/16/J11602676.htm, 검색일자: 2018. 6. 26.)

〈표 III-13〉 일본 품목분류 사례(드론)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무인항공기로 전기모터로 구동되고, 무선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실시간 화상을 보면서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물품
경합세번	- 제8802호의 기타의 항공기 또는 제9503호의 완구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무인항공기 본체에 있으며, 이는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이 분류되는 제9503호의 해

구분	내용
	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함에 따라 제9503.00호에 분류함

자료: 나고야세관, 117001067, 2017. 4. 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5/17/J51700167.htm, 검색일자: 2018. 6. 26.)

〈표 III-14〉 일본 품목분류 사례(농약 분무용 드론)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형태: 8개의 프로펠러를 갖는 드론에 탑재된 농약분무기로 스프레이 스프링클러 4개, 농약용 탱크, 튜브펌프가 드론에 결합되어 있음 - 작동원리: 비행 시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면 농약을 탱크에서 펌프로 빨아들여 스프링클러 노즐에서 분사, 최대 약 10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 비행속도는 8%임
경합세번	- 제8424호의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또는 제8802호의 기타의 항공기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그 성질·기능 등에서 농약분무기에 있다고 보아 제8424.49호에 분류함

자료: 도쿄세관, 116001240, 2016. 12. 1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1/16/J11600472.htm, 검색일자: 2018. 6. 26.)

〈표 III-15〉 일본 품목분류 사례(독립형 VR)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LCD 디스플레이, 프레넬렌즈, 카메라, 각종 센서, HDMI·USB 케이블 등이 포함된 착용형 영상장치로 PC로부터 수신한 가상현실 영상 등을 LCD에 표시하여 프레넬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기기로, 카메라와 센서에서 측정한 위치·기울기 등의 정보를 PC에 보내고, 그 정보를 이미지에 적용시킴으로써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음
경합세번	- 제8528호의 모니터, 제8543호의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제9004호의 고글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인정되므로 제8528.52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분류

자료: 도쿄세관, 117003023, 2017. 7. 1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1/17/J11701309.htm, 검색일자: 2018. 6. 26.)

나. 전자칠판

- 일본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결합된 형태의 전자칠판을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특제된 제8471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 제84부 주5에서는 모니터 등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분리 제시되는 경우 제 8471호로 분류하지 않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액정을 모니터가 아닌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표 III-16〉 일본 품목분류 사례(전자칠판)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대형 액정패널에서 터치스크린 조작에 의한 판서와 판서의 기록·저장 등이 가능한 전자식 칠판으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소프트웨어, CPU, 메모리를 내장함 - 유·무선 연결로 자료·사진·영상 재생, 애플리케이션 다운·삭제 등이 가능함
경합세번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제8528호의 액정모니터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84류 주5),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은 그 성상·기능 등에서 동일한 하우징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터치스크린), 출력장치(디스플레이)를 수납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인정되므로 제8471.41호의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

자료: 오사카세관, 117003939, 2017. 9. 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4/17/J41700387.htm, 검색일자: 2018. 6. 27.)

다. 블루투스 기계

- 일본은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통신 기능을 내장한 기계를 품목분류함에 있어 블루투스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고 각 기계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무선이어폰, 무선스피커의 경우 제8518호의 음향증폭기기에 분류하며, 이러한 기기 중 라디오 수신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물품은 제8527호의 라디오 수신기기로 분류하고 있음

〈표 Ⅲ-17〉 일본 품목분류 사례(무선이어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근거리 무선통신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등을 탑재한 이어폰으로 휴대폰 등과 연결하여 핸즈프리 통화, 음악 재생 등을 할 수 있음
경합세번	-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 또는 제8518호의 이어폰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근거리 무선통신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과 전기음향수신(이어폰)이라는 둘 이상의 보완·선택적인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 주된 기능은 이어폰으로 인정되므로 헤드폰과 이어폰이 분류되는 제8518.30호에 해당함

자료: 오사카세관, 118001147, 2018. 4. 1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4/18/J41800114.htm, 검색일자: 2018. 6. 27.)

〈표 Ⅲ-18〉 일본 품목분류 사례(라디오 무선헤드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근거리 무선통신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과 FM 라디오 기능을 탑재한 헤드폰으로 휴대폰 등과 연결하여 핸즈프리 통화, 음악 재생 등을 할 수 있음
경합세번	-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 제8518호의 이어폰 또는 제8527호의 라디오 수신기기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은 근거리 무선통신에 의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 수신이라고 인정되므로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로서 제 8527.91호에 분류함

자료: 오사카세관, 118000793, 2018. 3. 1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4/18/J41800087.htm, 검색일자: 2018. 6. 27.)

〈표 Ⅲ-19〉 일본 품목분류 사례(무선스피커)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블루투스 기능을 통하여 휴대폰이나 PC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
경합세번	-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 또는 제8518호의 스피커

구분	내용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변 및 분류근거	- 주된 기능은 스피커로 인정되므로 확성기가 분류되는 제8518.21호에 해당함

자료: 도쿄세관, 116004925, 2016. 10. 2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1/16/J11602230.htm, 검색일자: 2018. 6. 27.)

〈표 III-20〉 일본 품목분류 사례(라디오 무선스피커)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라디오 수신기를 내장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블루투스를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스피커로 출력
경합세변	-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 제8518호의 스피커 또는 제8527호의 라디오 수신기기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제16부 주3), 6
결정세변 및 분류근거	-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은 그 정상 등을 보아 라디오 수신기로 인정되므로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되는 제8527.99호에 해당함

자료: 도쿄세관, 117001555, 2017. 4. 1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_search/bunrui/J1/17/J11700693.htm, 검색일자: 2018. 6. 27.)

4. EU

- EU의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정보(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실제 수출입하는 수출입업자를 위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¹⁰⁰⁾
 - 수출입업자가 EU 회원국 세관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BTI가 발행됨
 - BTI는 품목분류에 대한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어느 나라에서 BTI가 발행됐는지 상관없이 모든 EU 회원국에 효력을 가짐
 - BTI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다음의 경우 효력이 중지됨

100) 이명구, 「EU 품목분류제도와 무역업계에 주는 시사점」, 『관세사』, 통권 151호, 한국관세사회, 2009. 1, p. 54

- 품목분류결정이 공표되거나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해석이 바뀌어 EU 관세법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BTI의 효력이 중지됨
- EU 회원국에서 발행된 모든 BTI는 EU 집행위원회의 유럽 BTI 데이터베이스 (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database, EBTI-database)에 입력됨¹⁰¹⁾

가. WCO 결정물품

- EU는 WCO 회원국으로 HS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따르고 있음
 - 스마트워치, 드론,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 WCO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분류하였음
 - 드론은 제9503호 오락을 위한 완구, 제8525호 디지털 카메라, 제8802호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으나 카메라 기능을 본질적 특성으로 판단하여 제8525호에 분류함

〈표 III-21〉 EU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형태: SmartWatch WSD-F10 액정 디스플레이(해상도 : 320×300 픽셀), 블루투스 모듈, 무선 모듈, 마이크, 모션 센서, 측정 기기로 이루어진 손목밴드임 - 기능: 시계, 기압, 방향, 고도, 속도 측정장치, 블루투스 또는 WLAN 연결을 통한 휴대폰과의 무선 통신(알림 및 문자 메시지 표시) 통신을 위한 장치, 기지국, 소리, 이미지 및 기타 데이터를 수신, 변환 및 전송하는 장치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17.62호에 분류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10990/16-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nomenccto=&keywordsearch=SMART%20WAT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101) 이명구(2009), p. 54


〈표 III-22〉 EU 품목분류 사례(드론)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HC-X-Drone-XL-LED-light-Camera, 쿼트로콥터로 전기모터 프로펠러, 메모리 카드 슬롯,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됨. 액세서리 세트(리모컨, USB 케이블선, 여분의 블레이드) 무게 117g - 기능: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가 녹화되어 SD 카드에 저장됨,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만 녹화가 가능하며 sd카드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사용됨, 최대비행시간 8분, 최대비행거리 100m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제9503호 - 카메라의 본질적 특성 제8525호 - 헬리콥터 8802호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25.80호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16936/18-1&refcountry=DE&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nomencno=&keywordsearch=DRONE&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표 III-23〉 EU 품목분류 사례(VR)

구분	내용
물품 설명	<p>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스마트폰용 VR “Terratec VR-1”은 스마트폰을 삽입하기 위한 플라스틱 몸체와 텍스타일 소재의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로 구성되며, 두 개의 42mm 광학렌즈가 있음. 패키지에는 설명서가 들어 있음 - 기능: 3D 형식의 비디오를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때 사용됨

구분	내용
	<p>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VR 안경 “Biloxi Art.No. 52135”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정 가능한 플라스틱 광학 렌즈(전체 제품 크기 131×71×24mm를 포함하며,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접이식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스마트폰은 홀더에 넣을 수 있음 - 기능: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통해 3D 형식의 비디오를 볼 수 있음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플라스틱으로 만든 렌즈와 함께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 류 제품이 분류되는 제9004.90호로 결정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10990/16-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o=&valenddate=&valenddato=&suppldate=&nomenct=&nomencto=&keywordsearch=SMART%20WAT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나. 블루투스 기계

- 블루투스 기계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8517호, 제8518, 제8527호에 분류됨
- 블루투스 헤드셋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인 제8517호에 분류됨

- 블루투스 라디오 알람 스피커는 시계와 결합하고 재생이나 녹음은 안되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제8527.92호에 분류됨

〈표 III-24〉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헤드셋)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블루투스 헤드셋, 액세서리 키트로 구성됨. 블루투스 헤드셋에는 블루투스 송수신기 모듈(크기 2.7×1.9×2.9cm, 2개), 마이크, 스피커가 있음. 액세서리 키트에는 충전기, 이어패드, 이어루프(earloop), USB 충전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음. 귀 쿠션 및 후크가 있음. - 기능: 전화 수락 및 종료, 재다이얼, 착신 전환, 볼륨 및 음악 제어, 블루투스 표준 신호 수신 및 전송, 휴대폰으로 핸즈프리 무선 전화용 오디오 신호 변환, 무선 네트워크 통신, 수신 장치, 사운드, 이미지 및 기타 데이터의 변환 및 전송.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17.62호에 분류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10990/16-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l=&nomenclto=&keywordsearch=SMART%20WAT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표 III-25〉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스피커)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블루투스 스피커, 배터리 7시간 지속가능, 무게 0.31kg, 높이 45.72 mm, 길이 190.50mm, 30피트의 블루투스 범위, - 기능: 스마트폰을 메인 디바이스로 하여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목소리·데이터를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전송받음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18.22호에 분류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GB502490282&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l=&nomenclto=&keywordsearch=BLUETOOTH%20SPEAKER&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표 III-26〉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라디오알람 스피커)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스마트 라디오 알람시계 스피커, 크기 105×222×57mm, 무게 573g, USB 포트: 2A×1A×1 마이크로 usb를 이용하여 충전 - 기능: 다양한 컬러의 무드 빛 기능,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27.92호에 분류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IEBTI18NT-14-6319-03&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nomencnto=&keywordsearch=BLUETOOTH%20SPEAKER&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표 III-27〉 EU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마이크)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마이크·스피커 일체형인 블루투스 마이크임. 배터리 용량은 2000 mAH로 6시간 지속가능함, SD 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음. 소리는 15 W. 크기 8×25×8 - 기능: 노래방 연습을 위한 디바이스이며 유튜브 앱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음. 스테레오 마이크이면서 스피커 사용이 가능함. 음악의 소리 조절이 가능함. 디바이스 음악에 맞춰 4가지 컬러 LED를 작동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 제8518.30호에 분류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FRBTIFR-RTC-2017-0056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nomencnto=&keywordsearch=BLUETOOTH%20MICROPHONE&descript=&orderby=0&totalRecords=9&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18. 6. 11.)

5. 미국

- 수출입 관련 업자가 미국 세관에 물품에 대한 정보와 샘플을 제공하면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품목분류를 미리 알 수 있음¹⁰²⁾
 - 사전심사제도는 심사신청 후 90일 이내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며 같은 조건의 수입물품은 동일한 과세가격을 적용함
 - 세관에 의해 부여된 품목분류는 모든 미국 세관에서 유효함
 - 세관 규정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품목분류 결정은 유효함

가. WCO 결정물품

- 미국은 WCO의 회원국이며 품목분류 결정문을 따르고 있음
 - 스마트워치는 제8517.62호, 드론은 제8525.80호로 WCO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가상현실기기(VR)은 제9004.90호 이외에 제8528.52호 분류된 사례도 있음

〈표 III-28〉 미국 품목분류 사례(스마트워치)

구분	내용
물품 설명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형태: VivoActive HR 스마트워치로 손목에 밴드형식으로 착용함. 배터리</p>

102) 이상엽·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38

구분	내용
	<p>유지는 3주이며 GPS 사용 시 10시간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 0.8 × 4.1 × 25.7cm, 무게 318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사용자의 데이터와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짐. 다기능성 전기 웨어러블 제품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함께 사용하는 제품임.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전화, 이메일 미리보기, 일정알람, 문자받기, 음악을 재생할 수 있음. 전화, 문자, 이메일이 오면 진동으로 알려줌. 다운로드한 “Connect IQ”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 상태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음. 사용자의 심박수, 칼로리 소비, 계단 오르기, 수면의 질, 활동의 강도, 얼마나 걸었는지를 체크해줌. 기압고도계, 가속도계, 라이트(light) 센서, 자력계를 장착함. 스마트워치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계 기능인 날짜와 시간을 표시함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029호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 - 제9031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와 윤곽 투영기, 부분품과 악세사리 - 제9102호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oActive HR의 주요한 기능은 블루투스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는 것임 - 따라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의 제8517.62호로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VivoActive%20HR&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3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표 III-29〉 미국 품목분류 사례(드론)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HD 비디오 드론 2.4GHz 쿼드로콥터(4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체)로 디지털카메라와 리모컨으로 제어가 가능함. 카메라, 배터리, 라디오가 장착됨 - 기능: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가 녹화되어 SD 카드에 저장됨,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만 녹화가 가능하며, SD 카드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사용됨
분류규정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 3(b), 6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비디오 드론 액세서리에는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 분류를 통칙 3(a)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다른 구성요소들로 구성된 세트 내의 복합제품으로 간주하여 통칙 3(b)에 따라 소매판매를 위한 세트로 분류해야 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트의 주 목적은 비디오 드론을 작동하기 위한 것이며, HD 비디오 드론의 액세서리는 HD 비디오 드론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되므로 드론과 함께 분류됨 - HD 비디오 드론의 목적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캡처하고 기록하는 것이므로 HD 비디오 드론(복합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디지털 카메라에 있음 - 따라서 액세서리가 있는 HD 비디오 드론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는 제8525.80호로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drone&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3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표 III-30〉 미국 품목분류 사례(VR)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View-Master VR의 모양은 다이버형으로 생겼으며,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들어짐. View-Master 스타터 팩에는 손목 스트랩, 필름팩 (Preview Reel)이 포함됨. 두개의 플라스틱 렌즈가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계임 - 기능: The View-Master VR의 안쪽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스마트폰을 삽입하고 전용 앱을 실행하면, 두 개의 렌즈를 통해 사용자가 360°로 비디오를 볼 수 있음
결정세번 및 분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제9004.90호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Virtual%20Reality&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3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표 III-31〉 미국 품목분류 사례(VR)

구분	내용
<p>물품 설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DJI Mavic Goggles 모델명 G1S”은 복합기계로 DJI 드론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됨. 1920×1080 해상도, micro USB 포트, 오디오 포트, HDMI 포트, micro SD 카드 슬롯, 대형 조리개를 가진 비구면 렌즈를 장착함. 액세서리로 헤드밴드, micro USB 케이블, HDMI 케이블, 무선 클립과 충전기가 포함됨 - 기능: DJI 드론을 보기 위한 VR 고글임, 사용자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헤드트래킹 기능을 통해 사진이나 비디오 캡처가 가능함, 두 개의 고화질 화면과 장거리 저지연 무선 연결로 직접 보는 듯한 화면을 제공, 드론의 카메라 컨트롤 가능. 근거리에서 1080p/30fps 뷰를, 장거리에서 720p/60fps 뷰를 제공. 1인칭 시점(First Person View)을 제공하며 편광 방식을 이용해 영상이 오버랩되는 것을 예방함, 헤드밴드에 내장된 안테나는 360°로 신호를 커버함. 시네마틱 모드, 삼각대 모드 등 다양한 촬영 기능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 최대 6시간 연속 사용 가능
<p>경합세번 및 쟁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543.70호로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 물품은 복합기계로 주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제8543.70호에 해당되지 않음 - 대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음)가 분류되는 제8528호를 살펴보면, 제8528.5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음극선관 이외의 모니터가 분류되며, 제8528.59호에는 기타의 음극선관 이외의 모니터가 분류됨 - 해당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8528.52호에 분류됨
<p>결정세번</p>	<p>- 제8528.52호</p>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Virtual%20Reality&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3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나. 블루투스 기계

- 미국은 블루투스 헤드셋은 제8517.62호, 라디오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사운드바는 라디오 수신기기 기타 제8527.99호에 분류함

〈표 III-32〉 미국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헤드셋)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Blackwire C720"은 커뮤니케이션 헤드셋으로서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며,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 가능함 - 기능: 전화가 왔을 때 사용자가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 스마트 센서 기술로 자동적으로 전화에 응답함. 인라인 컨트롤을 통해 볼륨 조절·음소거 기능의 제어가 가능함. 사용자가 전화 통화 중일 때 빛이 이어패드에 들어와 있어 통화 중임을 인식할 수 있음. 빛과 목소리로 사용자에게 볼륨, 음소거, 연결 상태를 알려줌
결정세번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호로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bluetooth%20headset&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3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표 III-33〉 미국 품목분류 사례(블루투스 사운드바)

구분	내용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사운드바는 두 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짐. AC/DC어댑터, 케이블, 설명서, 리모컨이 포함됨 - 기능: FM 스테레오 라디오, TV나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 블루투스 가능. USB 포트는 없음
경합세번 및 쟁점사항	- 판매자는 물품을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로 음성기록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이 분류되는 제8527.91호로 주장하였으나 사운드바는 USB 포트가 없으므로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결정세번	- 기타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되는 제8527.99호로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sound%20bar&collection=ALL&fromDate=2011-12-19&toDate=2018-06-17&sortBy=DATE_DESC&pageSize=10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다. 자율주행기기

- 차선이탈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이 있음
 - 자율주행기기의 발전과 함께 차선이탈 경보시스템이 자율주행기기에 장착되고 있음
 - 미국은 해당 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특정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의 전기기기 제8543.70호로 분류함

〈표 III-34〉 미국 품목분류 사례(자율주행기기)

구분	내용
물품 설명	- 형태: 모델명 “95890-C1000”인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동일한 하우징에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음. 자동차 백미러 뒤에 설치함 - 기능: 차선이탈을 감지하기 위해 자동차에 사용. 하이빔으로 자동 컨트롤이 되며, 전방충돌 경고시스템이 있음. 카메라의 센서에 의해 이미지가 감지되고 분석됨. 차선에 너무 가깝게 운전하는지, 전방의 자동차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지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자동차의 CAN 통신(Controller Area Network)에 보내어 경고를 보내냄
결정세번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8543.70호로 분류함

자료: 미국 CROSS, <https://rulings.cbp.gov/search?term=Lane%20departure%20warning%20system&collection=ALL&sortBy=RELEVANCE&pageSize=50&page=1> (검색일자: 2018. 6. 18.)

6. 소결

- 우리나라, 일본, EU, 미국은 모두 WCO 회원국으로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HS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지만, 결정사례와 동일한 규격·사양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다르게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스마트워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8517.62호로 분류하였으나 일본은 통화기능이 없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스마트폰 등 모기계와 연동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 시계를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제9102.12호의 전기식 시계로 분류함
 - 드론은 WCO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된 규격에 대하여 제8525.80호로 분류함에 따라 디지털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은 놀이용의 것은 제9503호, 농약살포용은 제8424.49호 등 용도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 VR은 WCO에서는 형태·용도에 따라 다이브형의 것은 제9004호, 독립형으로 비디오게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9504호에 분류하였으나 일본, 미국에서는 WCO에서 결정한 물품과 다른 형태의 것 즉,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였으나 특정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은 제8528.52호에 분류하였음
- WCO 결정 사례는 드론이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 것과 같이 특정호에 분류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물품도 기능에 따라 해당 세번에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특정 기능에 의해 품목분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 품목으로 여겨지는 물품들이 하나의 품목번호가 아닌 여러 품목번호에 분류되고 있음
 - 스마트워치, 드론, VR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의 유무, 연결되는 기계의 종류 등 용도·형태에 따라 다른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블루투스 기계의 무선통신기능을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으로 보아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 무선통신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블루투스 스피커와 마이크는 음성 확장 기능을 주기능으로 인정하여 제8518호로 분류하며,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스피커 등은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는 제8527호의 해설에 따라 제8527호에 분류함

- 반면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 EU, 미국이 모두 무선 통신기능을 주기능으로 판단하여 제8517.62호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로 분류하였음
 - 일본은 헤드폰과 이어폰이 분류되는 제8518.30호에 분류함

- 이외에 동일한 형태·기능의 물품이지만 각 나라별로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전자칠판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8528호에, 일본은 8471호에 분류함
 - 우리나라는 전자칠판의 주기능을 모니터로 보아 제8528.52호로 분류함
 - 일본은 전자칠판의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보고 동일 하우징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 8471.41호로 분류함
 -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S)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9031.49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8543.70호 분류하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방충돌이나 차선이탈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고를 주는 광학식 측정용 기기로 분류하였음
 - 미국은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가 분류되는 제8543.70호에 분류함

IV. 시사점

-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매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기존의 품목분류 규정으로는 신제품의 출시 속도에 맞춰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신제품의 분류기준은 기존의 품목분류 규정에 없는 경우가 많거나 그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HS에서는 분류범위·방법 등을 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에서 규정하지 못한 경우 품목분류에 활용하도록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2 내지 4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통칙에 대한 해석도 국가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복합기계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어떤 기능 또는 어떤 구성요소를 주기능이나 본질적 특성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함
 - 문화, 관습, 언어, 경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 간의 혼선 내지 분쟁의 원인이 됨
 - WCO도 주기능이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각국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품목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에 따라 WCO는 신제품 출시 또는 무역 거래량의 변화 반영, 품목분류 기준의 명확화, 사용되지 않은 규정의 삭제 등을 위하여 회원국의 의견 개진 및 검토를 통해 HS를 5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HS 개정을 위한 논의에 약 3~4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¹⁰³⁾, 개정안의 발효에도 2~3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HS 개정은 신제품의 개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WCO 이사회가 심의한 HS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해 통지되며, 4월 1일 전에 통지된 경우 통지일 이후의 제2차연도 1월 1일에 발효되고,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 경우 통지일 이후의 제3차연도 1월 1일에 발효됨¹⁰⁴⁾
- 이와 같이 복합기계의 품목분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러 관세제도에서 품목분류가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본문에서 살펴본 품목분류 기본 원칙과 복합기계 품목분류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시사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품목분류에 대한 안내 강화

- 품목분류는 관세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품목분류의 결과에 따라 기업과 관세행정당국 간의 마찰,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품목분류의 결정 세율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 FTA 수혜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감면 대상, 관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며 사후 추징의 위험성이 존재함¹⁰⁵⁾
- 기업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신청할 수 있는 품목분류사전심사는 품목분류 시 가장 중요한 참고 사례임

103) 김성채(2017)

10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16조 개정절차

105) 김구태·박형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4. 2., p. 60

- 또한 품목분류에 대한 책자 배포, 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안내, 기업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통해 변경되는 품목분류에 대해 인지도시켜야 함
 - 한국 반도체 연구조합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품목분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품목분류(HS) Guide-Book을 발간함¹⁰⁶⁾
 -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품목분류체계, 국제분쟁 대응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¹⁰⁷⁾

2. 관련 규정의 정비

- 복합기계의 품목번호는 관세율을 정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감면, 환급, 원산지, 수출입요건의 대상을 결정하기도 함
 - 감면, 환급, 원산지, 수출입요건은 조세수입보다는 경제·사회·문화·보건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그 적용대상을 결정함
 - 복합기계의 경우 주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되기 때문에 보조적·보완적 기능이나 특성으로 간주된 구성요소에 대한 감면 등은 적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 적용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즉 복합기계의 보조적·보완적 기능이나 특성으로 간주된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적 목적은 고려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 감면대상의 최신성 확보

-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5조의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

106)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s://www.ksi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7&sop=and (검색일자: 2018. 6. 22.)

10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292&bbsId=BBSMSTR_1016&nttId=1380 (검색일자: 2018. 6. 22.)

한 감면세는 그 대상 일부를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대상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감면신청을 할 수 없음

-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을 한정하고 편의를 위하여 대상 규격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연계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상 규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상 품목번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신청이 불가능함
 - 실제로 LASER DOPING EQUIPMENT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연번 42번의 주입기에 해당하였으나 연계되는 품목번호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질의를 통해 해당 품목번호를 추가하였음(기획재정부령 제183호, '10. 12. 31.)¹⁰⁸⁾

- 복합기계의 경우 주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므로 보조적·보완적 기능이나 특성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감면물품의 규격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감면대상 규격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개발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규격에 분류 가능한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나. 간이정액환급 기준의 정비

- 수출물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환급하는 정액환급의 경우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환급률표를 고시하므로 복합기계의 환급액도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짐
 -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지만¹⁰⁹⁾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품목번호별로 환급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짐
 - 실제 VR이 분류될 수 있는 품목번호인 제9004.90-2000호, 제9504.50-1000

108) 관세청, 통관기획과-1499, 2011. 3. 23.

10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호, 제8528.52-1000호의 수출금액(FOB 가격) 만 원당 환급액은 각 20원, 10원, 130원으로 모두 다름

- 또한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복합기체는 같은 품목번호 물품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경우¹¹⁰⁾가 많아 품목번호별로 정해진 환급액은 해당 복합기체에 소요된 원재료의 실제 납부관세액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간이정액환급은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환급액을 정하는데¹¹¹⁾ 간이정액환급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 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물품과 상이한 복합기체의 수입·수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해당 품목번호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기체의 정액환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품명 또는 규격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복합기체의 각 구성요소 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이 동일한 품목번호의 다른 물품의 평균값과 현저히 다른 경우 해당 복합기체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환급액을 고시할 필요성이 있음

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검토

- FTA에서 역내산·역외산 물품을 차등 대우하는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민감 산업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 간의 협상에 의해 품목별로 상이하게 결정되므로¹¹²⁾ 복합기체의 원산지결정기준 또

110) 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원재료와 그 소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임

1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한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짐

- FTA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협정 발효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제품 복합 기계에 대한 산업보호 등 정책적 목적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음
- 특히 복합기계의 보조적·보완적 기능으로 판단된 구성요소와 주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정된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다른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스마트워치가 분류될 수 있는 제8517.62호, 제9102.12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각각 6단위 세번변경, 2단위 세번변경으로 제9102.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보다 어려움
- 품목번호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제8517.70호의 무선통신모듈을 사용하여 생산된 스마트워치가 제 8517.62호 또는 제9102.12호에 분류될 수 있고, 각 소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해당 스마트워치가 제8517.62호에 분류된다면 역외산 물품이 되고 제9102.12호에 분류된다면 역내산 물품이 됨
- 이와 같이 FTA 특혜요건 중의 하나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는 밀접한 관계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교역 시장에 큰 역할을 하는 복합기계의 경우 FTA 협상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복합기계가 개발되기 전 협상이 되었거나 발효된 FTA의 경우 재협상 또는 이행위원회 협의 시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2) 권미옥·나희량,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무역학회지』, 제41권 3호, 한국무역학회, 2016. 6, p. 66

라. 통합공고의 정비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 물품별 수출입 요령¹¹³⁾을 고시하므로 복합기계의 수출입 요건·절차는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드론이 분류되는 제8525.80-1090호와 제9503.00-3800호 모두 「통합공고」상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제8525호는 비디오 카메라가 그 대상이며, 제9503호는 드론이 대상임
- 「통합공고」 제6조에서는 별표 1, 2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계기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목분류를 수출입 요건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복합기계는 주기능이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출입 요건 등이 연계되지 않은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보조적·보완적 기능이나 특성으로 판단된 구성요소에 대한 수출입 요건 등이 주기능이나 본질적 특성을 갖는 물품의 품목번호에 연계되지 않을 수 있음
- 품목분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공고」 제8조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 1, 2의 수출입요령에 계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기계가 분류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 공고 제6조에 따라 별표 1, 2에 품목별 수출입 요령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제8조의 별도규정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113) 별표 1. 수출요령, 별표 2. 수입요령에서 품목번호별 수출입 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있는 수출입 요건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제8조의 별도규정 품목에 복합기계의 요건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대상물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3. HS 개정 준비

- HS는 1988년 출범 후 총 6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차 개정본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제7차 개정을 앞두고 있음¹¹⁴⁾
 - HS는 체약국 정부, 관세 및 무역중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발전 또는 국제무역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협약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면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음
 - HS의 품목분류표 개정주기는 협약에 규정한 바는 없으나 2002년부터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WCO에서는 제7차 개정을 앞두고 2014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는 2022년 개정안이 HS 검토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가. 복합기계 품목분류 규정의 일원화

-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는 제16부 주3 또는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가 적용되는데, 이는 제16부 주3이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임
 - 제16부 주3에서는 해당 주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제16부 주5에서 기계의 범위를 제84류, 제85류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기계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기계는 제84류, 제85류 물품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114) 김성채(2017)

따라서 해당 규정은 제84류, 제85류의 물품에만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제90류 주3에서 제16부 주3을 제90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90류의 물품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는 복합기계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로만 구성된 물품보다는 제87류, 제88류, 제91류, 제95류 등의 류에 해당하는 복합기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는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가 적용되고 있음
 -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복합기계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 분류되는 데 우선순위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 또한 제16부 외에 복합기계가 주로 분류되는 제87류, 제88류, 제91류, 제95류의 물품은 제16부 주1에 의하여 제16부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품목분류 시 통칙 3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제외 주에 따른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b)에서의 본질적 특성과 제16부 주3이 규정하는 주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개념이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제16부 주3에서 복합기계의 정의를 둘 이상의 기계를 결합한 형태로 한정하지 않고, 둘 이상의 기계 또는 하나 이상의 기계와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신상 복합기계의 특계호 신설

- 2017년 HS 6차 개정 시 ITA 확대 협정¹¹⁵⁾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84류, 제85류

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노력은 미비했다¹¹⁶⁾는 의견이 있음

- 6차 개정에는 집적회로를 분류하는 제8542호에 복합부품집적회로를 포함하고, 제8528호의 용어 중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는 표현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3D 프린터가 사용재료에 따라서 제8463호, 제8475호, 제8477호 또는 기타 호인 제8479호에 분류되는 등 신상 복합기계에 대한 개정이 미비하였음

□ 복합기계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류기준을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분쟁, 추징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물품을 특개·신설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¹¹⁷⁾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여 HS 소위원회에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HS 검토 소위원회에서는 2022년 HS 제7차 개정에 사용재료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위한 특개호 신설방안을 논의 중임¹¹⁸⁾
- 3D 프린터 이외에 활용범위가 확대되거나, 무역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VR 등의 복합기계 분류를 위한 호의 신설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드론의 경우 현재 촬영용, 운반용, 오락용, 농업용 등 그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VR의 경우 디스플레이 장착 유무와 특정 기계의 전용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있음
 -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물품 등 기존 H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능을 수

115)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를 합의한 협정으로 기존 1996년 협정에서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되었으나 2015년 확대협정에서는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2015. 12. 17.)

116) 김명섭, 「WCO HS 개정에 따른 HSK의 주요 개정 해설(2)」,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25호, 2016. 12.

117) 김성채, 「2022년 HS 개정 논의 동향(2)」,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80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1.

118) 김성채(2017)

행하는 물품들은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어 기타 호에 분류되고 있음

- 특정 복합기계를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신설된다면 관세율뿐 아니라 감면, 환급, 요건, 원산지 등 품목분류를 활용하는 제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복합기계가 분류되는 특계호가 없으면 해당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호에 감면, 환급, 요건, 원산지 등의 규정을 명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다른 물품과의 정책적 목적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품목분류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주력 물품의 특계호 신설·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도적인 WCO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¹¹⁹⁾
 -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모듈이 구조, 제조단계,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여러 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8524호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119) 김성채(2018)

참고문헌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 권미옥·나희량,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6. 6.
- 김구태·박형래, 「기능단위기계의 개념 정비와 실무상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3.
- _____,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4. 2.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명섭, 「드론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69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 3.
- _____, 「WCO HS 개정에 따른 HSK의 주요 개정 해설(2)」,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25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 12.
- _____, 「다기능기계와 기능단위기계의 경합」,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87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3.
- 김석윤, 「Sony Playstation VR set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36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2.
- _____, 「Multi Function Camera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60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8.
- 김성채, 「2022년 HS 개정 논의 동향」,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75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12.

_____, 「2022년 HS 개정 논의 동향(2)」,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80호,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2018. 1.

김영아(관세평가분류원), 「꺠럭시 기어는 어떻게 무관세가 됐을까?」, 『조세일보』,
2016. 1. 5.

김진용, 「가상현실 헤드셋의 품목분류」,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48호, 2017. 5.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2015. 12. 17.

이명구, 「EU 품목분류제도와 무역업계에 주는 시사점」, 『관세사』, 통권 151호, 한국
관세사회, 2009. 1.

이상엽·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WCO,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5th Session,” 2015. 3.

_____, “Classification of articles in the HIGH_TECH area,” 2015. 6.

_____,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8th Session,” 2016. 10.

_____,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59th Session,” 2017. 3.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한국반도체산업협회, www.ksia.or.kr

미국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https://rulings.cbp.gov>

일본 관세국, www.customs.go.jp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WCO, www.wcoomd.org

관세연구 18-0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에 관한 연구

발 행 2018년 6월 29일

저 자 신상화 · 양지영 · 이재선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36-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8-02

복합기계의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에 관한 연구